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고충민원 처리사례 (1)

□ 민원 제목 : ○○산업단지 내 생활오수 배출 부담금 경감 요청

□ 신청 취지

- 산업단지 인근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의 생활오수에 대해서는 하수도 요금만 부과하고 있음에도,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인 근린생활시설에서 배출하는 오수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내 공장에서 배출하는 폐수와 동일하게 공공폐수처리시설설치부담금과 공공폐수처리시설사용료 및 재투자적립금(이하 '부담금')을 부담하고 있어 하수도 요금의 2~6배에 이르고 있음.
- 정화조 등 개별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하수관로에 연결하는 등 하수도법에 의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허락한다면 공사비는 전액 신청인이 부담하겠음.

□ 피신청인 등의 주장

- 「물환경보전법」 제48조 및 제48조의2의 규정과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17조 및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화성시 관내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에 부담금 등을 납부케 하고 있음.
- 신청인 등 지원시설의 부담을 경감시킬 경우 나머지 입주업체의 부담이 가중되어 새로운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함.

□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15년에는 1톤당 4,678원, 2016년에는 1톤당 3,545원, 2017년에는 1톤당 3,490원, 2018년에는 1톤당 3,456원의 부담금을 납부하였으며, 하수도 요금(각각 450원, 530원, 610원, 610원)에 비하여 5.7배 ~ 10.3배의 비용을 부담하였음.
- 2019. 2. 1. 피신청인은 산업단지 내 일부 지원시설 및 주거시설 용지의 원인자에 한하여 부담금 등의 일부만을 부과하고, 부족재원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자인 화성시에서 시비로 충당하여 지원하는 것이 관계법령상 가능한지 여부를 환경부에 질의하였고,
- 2019. 3. 11. 환경부는 피신청인에게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3에 부담금과 수수료의 징수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3항 및 제63조의 규정에 비용의 범위 및 사용료 산정 시 고려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의 질의내용대로 가능할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음.

□ 관계 법령 등

- 「물환경보전법」 제2조 및 제12조
- 「물환경보전법」 제48조 및 제49조
-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2 및 제49조의3

□ 판단 및 결론

- 부담금이 조세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배출하는 오수의 종류와 양에 따라 부담하도록 하여야 하고, 도시지역의 근린생활시설이 배출하는 오수와 산업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이 배출하는 오수가 동일하다면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부담금도 동일하여야 합리적임.

- 따라서 지원시설을 공공폐수처리구역에서 유입 제외하여 하수처리 시설로 처리케 하거나, 하수도 요금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결론 : 의견표명

- 신청인의 신청취지와 피신청인의 주장, 사실관계,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 피신청인은 공공폐수처리계획을 수립할 때에 생활오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공공폐수처리구역에서 제외하여 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도록 하거나,
- 산업단지 내에 있으나 생활오수를 배출하는 업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담금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에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고충민원 처리사례 (2)

□ 민원 제목 : 과다한 하수도 요금 시정요망

□ 신청 취지

- 주거의 용도와 숙박의 용도로 혼용되고 있는 “생활형숙박시설”의 상수도요금보다 하수도요금이 1.9배(상수요금 200,640원, 하수요금 385,850원) 많이 나오는 사유가 무엇이며,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알아본 결과 타 시군은 상수요금과 하수요금이 비슷한 수준이므로 이에 민원을 제기함.

□ 피신청인 등의 주장

- 상수도와 관련해서는, 「화성시 수도급수조례」 제24조제1항의 관련업종 구분표에 의거하여 일반용 업종을 적용하고 있고, 현장 확인결과 주로 가사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같은 조례 제26조에 의거하여 전입되어있는 41세대는 가구분할 적용으로 1세대당 12세제곱미터씩 가정용으로 요금을 부과하고 있음.
- 하수도와 관련해서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업종은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으로 구분되며, 신청인의 건물은 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생활형숙박시설”이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도대로 부과업종을 일반용으로 부과함.

□ 사실관계

- 상수도는 「수도급수조례」 제26조제2항의 “단일 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수로 나눈 평균량을 산정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고 제4항에서 단일 계량기로 2가구 이상의 가정용 수도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12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함. 또한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5항과 관련하여 “제11호 가구분할신고서” 서식의 “유의사항” 1번에도 가정용 상수도에만 적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어떤 것이 “가정용”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본 규정을 적용하여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12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 상수도요금을 부과하였음.

-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화성시하수도사용조례」 제13조제2항 “별표1”에 사용료를 명시하여 업종별 요금표에 따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업종은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업종별 정의 규정되어 있지 않음. 또한 「화성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표의 가정용에 한정하여 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 단위)에서 단일 계량기로 급수되는 급수량을 2가구 이상이 공동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하고 있음. 이 경우 사용가구는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실제 거주자 가구를 말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가정용에 한정하여 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 단위)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고 용도가 겸업이라도 숙박시설로 분류되므로 “생활형숙박시설”은 가정용에 해당되지 않아 일반시설로써 적용하여 하수도 요금을 부과한 사항임.
- 결론적으로 본 민원은 상수도요금에 대해서는 가구분할 규정을 준용하여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12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부과하였고, 하수도요금은 일반용으로 부과하면서 발생한 사항임.

□ 관계 법령 등

- 「수도법」 제38조
- 「지방공기업법」 제22조
-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7조, 제139조
- 「하수도법」 제65조
- 「하수도법 시행령」 제36조

□ 판단 및 결론

- 현재의 조례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상수도의 경우 「화성시수도급수조례」 제24조제1항 “별표3”의 업종 구분표에서는 제1항에 “전용 및 공용급수장치에 의한 가사용 급수”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가정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음.
- 또한 「수도급수조례」 제26조제2항의 “단일 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있는 가구수로 나눈 평균량을 산정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단일 계량기로 2가구 이상의 가정용 수도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12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건축물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있는 가구를 가정용”으로 보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할 것임.
- 「하수도사용조례」 제13조의2 “별표1”의 “주1”에서는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 사용료 요율이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무엇보다도 먼저 업종별 정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결과 : 제도개선 권고

- 피신청인은 상·하수도의 요금부과를 위한 업종별(가정용, 일반용 등) 명확한 정의가 없으므로 조례개정 등 제도개선하도록 권고함.